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6일, 한기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9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
가결)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기호의원)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 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 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으로서의 보수액을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개정안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에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과거에 군간부후보생¹⁾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장교 보수액과 군간부후보생 보수액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소급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부칙 제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u>장교후보생</u> 등의 보수) ① (생 략) ② <u>준사관이나 부사관</u> 으로서 <u>장교후보생</u> 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u>장교후보생</u> 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0조(<u>군간부후보생</u> 등의 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장교, 준사관이나 부사관</u> ----- <u>군간부후보생</u> ----- ----- <u>군간부후보생</u>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액 지급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 지급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 현행법 제20조제2항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준사관·부사관 등이 군계급 및 서열²⁾이 높은 장교로의 전환 시, 장교후보생 기간 동안의

1)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2조(정의 등)제1항제4호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이전 보수액 보전을
입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절(병적종료) 제30조~제32조 >

제7절 병적종료

제30조(병적종료) 현역 장병이 군 복무 중 군간부 선발전형에 합격하여 군간부 후보생 과정에 입교할 경우 또는 임기제 부사관 임관 등 타 신분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원래 신분의 병적을 종료하기 위하여 병적종료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제31조 (발령절차) 병적종료 명령은 군간부 후보생 교육과정 입교자는 입교일자 부로, 임기제부사관 임관자는 병 의무복무의 종료일자부로 발령하며, 장교는 국방부장관이, 준사관 이하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 발령한다.

제32조(원 신분 복귀) ①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여 병적종료된 사람이 중도퇴교하는 등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 병적종료에대한 무효 인사명령을 발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원래 신분으로 복귀한 경우,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은원래 신분의 군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국방부는 2020년도부터 육군 모집요강상 현역장교들의 준사관후보생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규정하였고, 2022년도에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병적종료 관련 조항들(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이 만들어짐에 따라 중도퇴교하는 경우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 되어 2022년부터 현역장교에서 항공 준사관후보생 과정에 입교가

2) 「군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3.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작되었음.³⁾

그러나 장교에서 준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경우 준사관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법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이들은 이전의 보수액을 받지 못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부사관·준사관에서 장교로 전환하는 자들과 비교하여 신분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⁴⁾

□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현역 장교의 준사관후보생으로 전환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분간 전환 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군계급 및 서열의 역순으로 현역 장교가 준사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장병이 직업적 안전성·항공수당 등의 장기적인 소득 증가·전역 후 민간에서의 높은 보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병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보수 보전 입법조치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의 계급 및 서열 등에 근거한 기존의 군간부체계, 현행 군인력 획득 측면에서 현역 장교의 준사관후보생 전환 촉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그간 현역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만

3) 2024년 9월 현재 항공준사관으로 전환한 장교는 5명임.

4) 장교에서 준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자들의 입교 전과 입교 후 보수비교는 참고자료 참조

적용되었던 「군인보수법」상의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 지급 규정을 군간부후보생과정에 입교한 현역 장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현역 장교들 역시 기존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각 신분 간 보수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의 부칙 제2조(보수액 지급에 관한 특례)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액 지급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022년 및 2023년에 현역 장교에서 준사관후보생으로 전환한 5명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거 준사관후보생 교육기간(7~8개월)에 대하여도 장교 보수액과 군간부후보생 보수액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도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 내지 제한됨.⁵⁾

다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⁶⁾ 해당 특례를 규정할 경우에는 2022년 및 2023년도에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던 보수액을 2024년도

5)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판례집 7-2, 893, 899-901; 헌재 1998. 11. 26. 97헌바65, 판례집 10-2, 685, 693-696.

6)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판례집 7-2, 893, 899-901; 헌재 1998. 11. 26. 97헌바65, 판례집 10-2, 685, 693-696.

또는 2025년도 예산으로 추가 지급해야 함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개정안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에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군간부 신분 전환 시의 보수보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비용추계서

개정안에 따라 장교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임명될 때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5,000~6,000만원 수준으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에 해당함.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

[붙임] 1.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장교후보생 등의”를 “군간부후보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사관이나 부사관”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을 “「병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으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를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액 지급에 관한 특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액 지급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u>장교후보생 등의 보수</u>) ① (생 략) ② <u>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u> <u>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u> 자에 게 그 훈련기간 중에만 <u>장교후</u> <u>보생으로 임명되기</u> 전의 보수 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다.	제20조(<u>군간부후보생의 보수</u>) ① (현행과 같음) ② <u>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u> <u>---- 「병역법」 제2조제4호에</u> <u>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u> <u>-----</u> <u>-----군간부후보생으로</u> <u>임명되기-----</u> <u>-----</u> <u>-----</u> .